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

더조은요양원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목적

1.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과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입소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입소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2. 계약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분증(입소자, 보호자) 사본 각 1부

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6.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대상자)

3. 계약 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가능하다.

4.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등급 인정만료일로 하며 등급 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3. 입소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인적사항, 계약변경 및 해약,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항목별 비용, 비급여대상과 그 비용 등을 설명과 함께 기재 후 서명등을 포괄하여 체결하고 각각 계약서를 보관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③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⑦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⑨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① 입소자의 건강, 병적 상태등의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의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 의무
⑤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의 의무
⑥ 입소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3.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지급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7.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요양보호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8. 계약의 해지

1. 입소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이내에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입소자 본인(또는 보호자)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④ 3회 이상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⑤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다른 입소자의 인권과 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건강과 관련한 중요 정보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입소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⑧ 1개월 이상 입원을 하여 더 이상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⑨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⑩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 이용료에 관한 사항 **

1. 이용료

더조은요양원의 이용료는 매해「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가 규정에 따르며 자동으로 갱신 변경한다.

1.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에서 정한다.

2.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및 비급여 상세비용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이용료의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르되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 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경우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②「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식간식비 및 유료프로그램비의 변경에 관해서는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질 때 운영위원회를 시설장이 소집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한다.(현 2026년 식비3,000원(1식), 간식비 670원, 프로그램비, 기타 유료프로그램 발생시 현시세)

4. 비급여비용 변경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혹은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고 비급여변경은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3. 이용료의 납부

1.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를 매월 20일 납부하기로 한다.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2. 입소자나 보호자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3. 시설은 이용료를 계산하여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4.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 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5. 입소비 납부방법은 수납지정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6.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2026 년 입소자 2.1 명당 요양보호사 1 인 미만 경우)

◯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일일수가 (단위 : 원)

등급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26년 수가	'26년 본인부담
1	90,450	18,090	93,070	18,614
2	83,910	16,782	86,340	17,268
3,4,5	79,240	15,848	81,540	16,308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본인부담금 100 분에 60) (본인부담금 100 분에 40)	감경 8%, 12%

◯ 계약의사

초진	재진
18,840 원	13,370 원

◯ 비급여 항목비용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비(1 식)	**3,000**
간식비	670
이 미용비	0